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12.16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'96. 1. 8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분뇨관련 대행계약기준이 완화된바 이를 개정함으로써 분뇨 수집·운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분뇨관련영업대행계약 기준 [별표1]중 인력기준은 분뇨의 수집·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으로 하고, 차량 및 장비의 기준은 용량합계 3,600ℓ 이상의 흡인식차량과 신 교통전화 1대 이상의 소유자로 함 (안 제5조 제1항)

나. 분뇨수집·운반 영업 허가신청자의 사무소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내에, 정확조청소업 허가신청자의 사무소 소재지는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함 (안 제15조 제1항)

3. 관계법령
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5조 제1항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(이하“대행업자”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대행업자는 [별표1]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, 분뇨 수집·운반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)①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(이하 "대행업자"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 ② ~ ⑤ (생략)	제5조(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)①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(이하 "대행업자"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5조(분뇨관련영업허가)①구청장은 법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자의 점수를 정할 수 있으며,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. ② ~ ④ (생략)	제15조(분뇨관련영업허가)①구청장은 법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자의 점수를 정할 수 있으며, 분뇨수집·운반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 두고,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

개정안

[별표1]

분노관련영업대행계약기준
(제5조제1항관련)

[별표1]

분노관련영업대행계약기준
(제5조제1항관련)

구분	자본금 또는 재산	인력	차량및 장비	차고
분노수집운반업	· 법인 : 5천만원이상	· 운전원 : 2인이상	· 응량합계 10,000 ㄹ 이상 흡인식차량	· 최저차고 면적(대당)
	· 개인 : 재산평가액 1억원이상	· 수거원 : 2인이상	· 소유(탈취 시설부착)	· 5톤미만: 13㎡
		· 사무원 : 2인이상	· 신고응전화: 2대이상	· 5톤이상 10톤미만: 26㎡
				· 10톤이상: 36㎡
정화조청소업		(생략)		

구분	자본금 또는 재산	인력	차량및 장비	차고
분노수집운반업	· 법인 : 5천만원이상	· 분노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	· 흡인식차량 1대이상(응량의 합계 3,600 ㄹ 이상)	· 최저차고 면적(대당)
	· 개인 : 재산평가액 1억원이상	(운전원 및 수거원 각1 인 이상)	· 신고응전화: 1대이상	· 5톤미만: 13㎡
				· 5톤이상 10톤미만: 26㎡
				· 10톤이상: 36㎡
정화조청소업		(현행과 같음)		